

의안번호	제 23 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8월 28일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
----------	----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 박형용, 박상돈,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황규철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각 장 및 조에 사용된 용어 중 “학자금 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으로 명확히 규정
- 나.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조)
- 다.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시기와 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의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명시 (안 제3조)
- 라.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거주
 - 소득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 해당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 14조)
 - “부적절한” ⇒ “부적당한”, “해촉” ⇒ “위촉 해제”
- 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 정책기획관’ 을 ‘도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사무관” 에서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함. (안 제12, 1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34 호

라. 협의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제외)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우선 지원대상)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 신청자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득 10분위 중 하위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3장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기획관리실장
2. 도의회 의원
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학교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충청북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의 대출이자 지원

3. 관련조문

- 가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소요경비 산출

나. 추계 결과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384,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도비 40%, 시·군비 6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김 두 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도 비	153,600	153,600	153,600	153,600	153,600	768,000
시군비	230,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1,152,000
세 출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재원 조달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153,600	153,600	153,600	153,600	768,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230,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1,152,000
기 타 (민간 자부담)						